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 대국민 공개〉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65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의 대국민 공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7. 3.
3. 회 부 일 : 2025.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였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음.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와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최근 사회적 추세에도 부합함.

이에 법원이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의 대국민 공개

- 개정안은 유사사건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모델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지원 기능을 구축한 경우 법원행정처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생활의 비밀·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9조의2(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의 대국민 공개) 법원행정처는 유사사건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모델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지원 기능을 구축한 경우 이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생활의 비밀·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 법원행정처는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2025년부터 ‘재판업무지원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

해당 사업은 기존 사법업무전산화 시스템 내 지능형시스템 그룹을 AI와 연계 확대·개편하여 ① 법관의 재판준비·진행, 판결문작성 등 심리 전체 과정에서 관련 자료 분석 및 리서치 지원, ② 소장·공소장에 담긴 청구·공소내용, 행위시법 및 처벌 규정, 부수 처분 등 사건 특성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심리계획 수립 지원, ③ 소송주체가 제출한 재판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건 기본 요지 파악 및 쟁점 사항 비교 분석, ④ 손해배상 계산 관련 참조법령·판례와 변동 사항, 기초데이터 추출·입력을 통한 계산 결과 초안 기능 제공, ⑤ 재판자료 쟁점, 법률자료 검색 결과 활용 판결문 목차 추천 및 초안 생성, ⑥ 소송·신청 접수 서류 형식 요건 점검과 보정명령서·보완요구서 생성 지원, ⑦ 민사·가사사건 특성에 따른 사건유형별 분쟁 해결 시나리오 제공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LLM¹⁾)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법원 내부 사용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와 생성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모델,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재판업무지원 인공지능 서비스 연도별 계획>

AI 정보화 비전		AI로 실현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스마트 법원			
이행 전략		우선순위 중심 AI과제 추진 / 정보자원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 이해관계자 공감대 마련			
이행 단계		1단계: '25년 AI 기반 구축단계	2단계: '26년 AI 핵심역량 강화단계	3단계: '27년 AI 업무혁신 가속화 단계	4단계: '28년 AI 업무 고도화 및 확산 단계
재판업무지원 이행분야	AI 서비스 구축	-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리서치 서비스 개발 - 법률자료 통합검색지원 - 법률자료 검토분석지원	- 재판자료 분석 및 소송기록 비식별화 서비스 개발 - 사실관계·요지 분석지원 - 주장·쟁점 분석지원 - 음성자료 녹취록 생성·분석	- 재판자료 신건검토 및 쟁점지도화 - 민사·형사 신건 검토·분석지원 - 합소심 신건 검토·분석지원 - 사실관계·요지 분석지원 - 사건관계도·쟁점분쟁지도 - 검토보고서 작성지원 - 재판서 교정·검수 지원	- 재판업무지원 고도화 및 확산 서비스 개발 - 코트넷QA·지식광장 요약분석 - 개인정보추출 비식별화 지원 - 송달가능 주소 인식추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법률자료 대상 학습용 데이터 정제·가공 - 법률자료 대상 벡터DB 구축	- 재판자료 및 소송기록 대상 학습용 데이터 정제·가공 - 재판자료 및 소송기록 대상 벡터DB 구축	- 재판자료 신건검토 및 쟁점지도화 - 재판자료 신건검토 및 쟁점지도화	- 재판업무지원 서비스 관련 자료 학습용 데이터 정제·가공 - 재판업무지원 서비스 관련 자료 벡터DB 구축
	AI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언어모델 솔루션 도입 - 통합검색 솔루션 도입 - 텍스트분석(법률자료분석용) 솔루션 도입 - 관련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 STT 솔루션 도입 - 텍스트분석(재판자료 분석용) 솔루션 도입 - 관련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 텍스트분석(재판자료 추가분석용) 솔루션 도입 - 관련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 관련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
	AI 인프라 구축	- AI 학습 서버 도입 - AI 추론 서버 도입 - 빅데이터 Work Node 도입 - WEB/WAS/DB서버용 X86서버 도입 - 내부망 NAS 스토리지 도입 - 내부망 SAN 스토리지 도입 - 내부망용 N/W 및 보안 장비 도입 - 도입 서버용 시스템 및 보안 S/W 구성	- AI 검색 및 STT, 비식별 서버 도입 - 딥러닝/머신러닝 서버 도입 - 빅데이터 Work Node 추가 도입 - 내부망 NAS 스토리지 용량 증설 - 내부망 백업 스토리지 도입 - 도입 서버용 시스템 및 보안 S/W 구성 - AI 개발환경용 서버 도입	- AI 추론 서버 추가 도입 - AI 비식별 서버 추가 도입 - 내부망 백업 스토리지 증설 - 내부망 재해복구 스토리지 도입 - 도입 서버용 시스템 및 보안 S/W 구성 - 내부망 SAN스토리지 증설	- 내부망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 - 도입 서버용 시스템 및 보안 S/W 구성

자료 : 법원행정처

○ 개정안은 이와 같이 구축된 ‘재판업무지원 인공지능 서비스’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고,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영업 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법 절차 및 법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본인의 사건을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 문서 작성과 소송 절차 안내 등에서 있어서도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해당 서비스는 법원 내부망을 이용한 플랫폼으로서 미공개 판결서, 가사·소년 사건의 민감한 기록 등을 학습하거나 참조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및 기밀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둘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결과를 인용하여 허위 판결문을 생성하여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²⁾.

셋째, 판사들을 위한 폐쇄형 시스템에서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대국민 개방형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동시 접속자 대응, 보안 인프라 설치 및 망 분리 등 현재의 시스템 설계와는 다른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비롯한 사업 재구상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의 대국민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사법 접근성 향상이라는 입법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및 기밀 유출 가능성, 허위 판례 생성 등에 따른 부작용, 개방형 서비스 전환에 따른 예산 증가 및 시스템 전면적 재구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이 판결,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신문, 2025. 9. 27. 기사, “AI로 인한 법조계 위기 : 허위 판례 제출 논란”, 제민일보, 2025. 5. 14. 기사 등 참조

문 의 처
02-6788-5071